

창업교육센터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의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(개정 2018.

4. 30., 2020. 7. 1.)

1.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기획
2. 창업 휴학, 창업대체학점 인정, 창업수업 등 창업 관련 학사업무
3. 창업자 대입 특별전형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
4. 창업융복합전공제 개발, 창업강좌 개설 등 관련 학사제도 수립·시행
5. 창업 동아리 운영·지원, 창업 아카데미 개설 등 창업 마인드 확산 업무
6. 창업 인턴제 시행, 창업 현장실습 제도 운영
7. 창업 학·석사 연계과정 개발
8. 창업교육관련 수요조사 및 환류
9. 그 밖의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 교육 관련 업무

제2장 조직 및 임무

제3조(조직 및 업무) ① 센터에 창업교육부를 둔다.(개정 2016. 6. 1., 2017. 5. 15.)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대학 전체의 창업교육 관련 기획, 운영, 평가, 관리 등을 전담한다.(개정 2020. 7. 1.)

③ 창업교육부는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6. 6. 1.)

④ (삭제 2016. 6. 1.)

⑤ 센터의 행정업무는 산학인재원 행정실에서 담당한다.(개정 2016. 6. 1., 2017. 5. 15., 2020. 7. 1.)

⑥ 센터 운영의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 중점교원, 직원,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6. 6. 1.)

⑦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8. 4. 30.)

제4조(임면) ① 센터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(개정 2016. 6. 1.)

③ (삭제 2017. 5. 15.)

④ 산학협력중점교원, 연구원,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(개정 2016. 6. 1., 2017. 5. 15.)

제3장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)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상

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6조(구성) 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9. 4. 1.)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교무부처장, 교원인사부처장, 기획부처장, 학생부처장,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7. 7. 1., 2019. 4. 1.)

제7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심의사항)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장 재정 및 일반 행정

제10조(재정) 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(개정 2020. 7. 1.)

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
2. 기업 및 기관 지원금
3. 교비 지원금
4. 그 밖의 수입

제11조(예·결산과 사업) 센터장은 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서, 결산과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회계) 센터의 회계는 「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에 따른다. 다만 사업비 중 교비지원금의 집행은 우리 대학교 「예산회계 규정」에 따른다.

제5장 기타

제13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